

제2장 상품 무역

제1절 공통규정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넘지 않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용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용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비관세 조치란 교역되는 물량이나 가격 또는 양자 모두를 변경시키면서, 국제 상품 무역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적인 관세 외의 정책 조치를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공한을 통하여 통보한다.

5.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역에 적용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2.5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 1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2.6조

관세양허표의 전환

각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변경 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서 부속서 2-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자국 관세양허표의 전환이 부속서 2-가에 규정된 관세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품무역위원회가 채택할 합의된 전환 지침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제4절 특별 제도

제2.7조

상품의 일시 반입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되는 상품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 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8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각 당사국은 그 견본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퀸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비관세 조치

제2.9조
비관세 조치의 적용

-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에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10조
수입 및 수출 제한

-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료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에 대한 수입이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도에서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나.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된 분과위원회나 작업반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11조 비관세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에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과 피요청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별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으로부터 18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 접수로부터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적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적 협의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요청당사국은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에 기술적 협의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는 제8장(분쟁해결)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차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2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이 조에서 “수입허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와 관련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3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량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해외 대리인이나 수입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나 기관이 보증, 인증하거나 달리 열람 또는 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4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라 규율된다.

제2.1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이 조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조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따른 정의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4. 수출 당사국은 그 수출 당사국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 시의 적절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상호 관심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교환하고, 기술협력, 역량 강화 및 요청에 따라 협의 기회를 강화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이행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나. 캄보디아의 경우, 농림수산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7.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8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2.16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하고, 1995년 1월 1일 이래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결정 및 권고사항(G/TBT/1/Rev.14)과,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을 고려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각각 규정된 대로, 관련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 요청에 따라 적절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써 사용하고 중앙정부기관이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양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써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한다.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해당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 그러한 국제표준은 특히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개발한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 평가 시험 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억류 사유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과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사안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나.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표준연구원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제2.17조
상품무역위원회

1. 이 장 및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회합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것
 - 나. 이 협정상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라. 시의적절하게 전환 지침을 채택 및 검토하고, 양 당사국의 관세양허표의 전환과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를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 마. 합의된 바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것, 그리고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접촉선을 지정하는 것